

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

당사는 상법 제 354 조 및 당사 정관 제 14 조에 의거하여 당사와 주식회사 넥센산기의 소규모합병에 반대할 수 있는 권리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2014년 3월 10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그 권리를 부여함을 공고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2014년 2월 21일

넥센타이어 주식회사

경남 양산시 충렬로 355번지

대표이사 이 현 봉

명의개서대리인: 한국예탁결제원

사장 유 재 훈